

부속서 IX

제3.9조제3항에 규정된 상호 인정

제 1 조

서비스 공급자의 표준

당사국들은,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이 서비스 공급자, 특히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·면허·인증·영업 및 증명을 위하여 각 당사국이 적용하는 상호 수용가능한 표준과 기준을 개발하고 그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관련 국제 합의문서 및 표준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인정을 촉진하도록 권장한다. 당사국들은 진전상황과 경험한 장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2 조

임시면허

당사국들이 동의하는 경우,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기관이 타방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면허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권장한다.

제 3 조

검 토

제1조에 규정된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, 공동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한다.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기초하여,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관련 기관이 상호인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권장한다.